

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

보수액 및 평균임금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81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8838, 8834

I.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
(단위: 원)

구 분	보수액(월)	평균임금(1일)
학사 학위 과정 (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)	300,000	10,000
석사 학위 과정 (학·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)	1,000,000	33,330
박사 학위 과정 (석·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)	1,250,000	41,660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